

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채 우 진 의원)

의안 번호	23-7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 . 6 . .

발의자 : 채우진, 강동오, 고병준, 권영숙,
김승수, 신종갑, 안미자, 오욱자,
이상원, 한선미

1. 제정이유

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현행 법령은 대체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. 이에 “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”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지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“다중운집행사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
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국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행사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행사안전계획 수립 대상 범위
- 행사안전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

라.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, 제7조)

마. 사고발생 시 조치 및 대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
3. 관계법령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5. 18. ~ 5. 23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포구 내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중운집행사”란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.
2. “안전 관리”란 다중운집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3. “주최”란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.
4. “주관”이란 주최 기관·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 및 국민의 의무) ①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

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구가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행사안전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마포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서장”이라 한다) 및 마포소방서장(이하 “소방서장”이라 한다)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행사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
2.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

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다중운집행사 내용(일시, 장소, 수용 능력 등)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
2. 다중운집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
3.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
4.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
5.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
6. 비상시 교통계획(지하철, 버스 동원 및 통제)
7.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
8.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다중운집행사의 행사안전계획 수립 절차 및 관련부서 지정 등 필요한

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④ 구청장은 행사안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11조에 의해 설치·운영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.

제6조(유관기관과의 협조)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행사안전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, 교통관리, 응급조치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현장대응) ①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에 따라 다중운집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시 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, 호출, 유도,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①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다중운집행사 시 특정 시간, 구역,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,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고발생 시 대처)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·재난의 수

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·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(약칭: 재난안전법)

[시행 2023. 1. 5.] [법률 제18685호, 2022. 1. 4., 타법개정]

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신설 2019. 12. 3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[본조신설 2013. 8. 6.][제66조의9에서 이동,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<개정 2017. 1. 17.>]

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(약칭: 재난안전법 시행령)
[시행 2023. 1. 5.] [대통령령 제33198호, 2023. 1. 3., 타법개정]

제73조의9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. <개정 2018. 1. 18., 2020. 6. 2.>

1.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

2.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

가.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

나. 불, 폭죽,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

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8., 2020. 6. 2.>

1. 지역축제의 개요

2. 축제 장소·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
3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4.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
5. 비상시 대응요령,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

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0. 6. 2.>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·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2.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2.> [본조신설 2014. 2. 5.]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」 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안 제5조제2항제3호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(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)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김남희
연 락 처	02-3153-9466